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17.12.31.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에서 “2022년 12월 31일” 로 연장하였고
 - 안 제4조의2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2년으로 한다” 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 안 제8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10분의 5이하” 를 “10분의 2이하” 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7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안 제5조)

다. 구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
(안 제8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의2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지방회계법」 제49조를”로 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10분의5”를 “10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2. (생략)</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3. (생략)</p>	<p>제2조(기금의 재원) ----- ----- ----- ----- 따른다.</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 ----- . ----- ----- ----- .</p> <p>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 ----- ----- .</p> <p>③----- ----- ----- 각 호----- ----- .</p> <p>1. 3. (현행과 같음)</p>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② (생략)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② (생략)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회계법」 제49조를-----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0분의 2 -----

-----.